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입주자 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3.08.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8.23.(금)	24.09.02.(월)	24.09.03.(화)	24.09.04.(수)	24.09.10.(화)	24.09.12.(목)~24.09.24.(화)	24.09.25.(수)~24.09.27.(금)

I 공통 유의사항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제한 등의 사항은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 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신청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 위장전입, 주택청약통장 거래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합니다. (단, 공급 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함)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위탁자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 · 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2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427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홈페이지(https://hanulche-lacview.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8.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9.02.(월)	24.09.03.(화)	24.09.04.(수)	24.09.10.(화)	24.09.12.(목) ~ 24.09.24.(화)	24.09.25.(수) ~ 24.09.27.(금)
방 법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 · 모바일) 청약홈	• 견본주택 (주소 : 울산 남구 달동 1271–6)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남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5%) 완납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 분양권 전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일자에 처리하기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전매 가능일은 추후 공지 예정)
- – 분양권 전매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사업주체(필요시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사업주체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체결한 제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 · 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49437호(2024.08.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3–2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0층 8개동 총 803세대
  [특별공급 416세대(기관추천 73세대, 다자녀가구 120세대, 신혼부부 133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입주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427	01	059.9851A	59A	59.9851	19.6455	79.6306	37.5957	117.2263	32.2002	39	39	3	5	7	1	5	21	18	2
	02	084.9938A	84A	84.9938	26.7314	111.7252	53.2700	164.9952	45.6250	324	359	36	51	66	7	32	192	167	14
			84A1							2									
			84A2–1							15									
			84A2–2							16									
			84A3							2									
	03	084.9978B	84B	84.9978	26.8916	111.8894	53.2725	165.1619	45.6272	101	101	11	14	18	3	8	54	47	4
	04	084.9563C	84C	84.9563	27.8530	112.8093	53.2466	166.0559	45.6049	77	77	7	11	13	2	8	41	36	4
	05	084.9732D	84D	84.9732	27.6723	112.6455	53.2571	165.9026	45.6140	64	64	7	10	12	2	4	35	29	3
	06	084.9931E	84E	84.9931	26.7091	111.7022	53.2695	164.9717	45.6246	74	76	7	11	13	3	7	41	35	1
			84E1							2									
	07	084.9896F	84F	84.9896	28.6828	113.6724	53.2674	166.9398	45.6228	23	23	2	3	4	1	2	12	11	1
	08	096.9978A	96A	96.9978	30.2672	127.2650	60.7936	188.0586	52.0688	2	2	0	0	0	0	0	0	2	0
	09	096.9987B	96B	96.9987	30.2453	127.2440	60.7941	188.0381	52.0693	2	2	0	0	0	0	0	0	2	0
	10	110.9804A	110A	110.9804	35.6293	146.6097	69.5572	216.1669	59.5748	58	58	0	15	0	5	0	20	38	2
	11	127.9515A	127A	127.9515	43.3397	171.2912	80.2396	251.5308	68.7068	2	2	0	0	0	0	0	0	2	0
			합계							803	803	73	120	133	24	66	416	387	31

-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059.9851A	084.9938A					084.9978B	084.9563C	084.9732D	084.9931E		084.9896F	096.9978A	096.9987B	110.9804A	127.9515A
약식표기	59A	84A	84A1	84A2–1	84A2–2	84A3	84B	84C	84D	84E	84E1	84F	96A	96B	110A	127A

※ 84.9938A주택형의 약식표기(84A, 84A1, 84A2–1, 84A2–2, 84A3)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84.9938A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당첨 시 주택형 내 타입 및 동 · 호수는 임의배정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84.9931E주택형의 약식표기(84E, 84E1)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84.9931E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당첨 시 주택형 내 타입 및 동 · 호수는 임의배정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에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른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평]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 시설(도시가스 등) 부지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 ·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유형별로 접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주택형)			059.9851A	084.9938A	084.9978B	084.9563C	084.9732D	084.9931E	084.9896F	096.9978A	096.9987B	110.9804A	127.9515A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6	2	1	–	1	–	–	–	–	–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	6	2	1	1	1	–	–	–	–	–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6	2	1	1	1	–	–	–	–	–	11
	장애인	울산광역시	1	6	2	1	1	1	1	–	–	–	–	13
		부산광역시	–	2	–	1	1	1	1	–	–	–	–	6
		경상남도	–	2	1	1	1	1	–	–	–	–	–	6
	중소기업 근로자		1	8	2	1	2	1	–	–	–	–	–	1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51	14	11	10	11	3	–	–	15	–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			7	66	18	13	12	13	4	–	–	–	–	1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7	3	2	2	3	1	–	–	5	–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5	32	8	8	4	7	2	–	–	–	–	66
합 계			21	192	54	41	35	41	12	–	–	20	–	41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계약시	24/10/29	25/4/14	25/8/12	26/2/12	26/7/13	26/11/12	27/4/12	지정일
059.9851A	59A	105동 3호, 106동 3호	1층	2	276,759,000	206,241,000	–	483,000,000	10,000,000	14,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2층	2	280,770,000	209,23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3층	2	284,208,000	211,792,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4층	2	287,646,000	214,354,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5층	2	291,084,000	216,916,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6~9층	8	299,679,000	223,321,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10~19층	18	302,544,000	225,456,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20층 이상	3	305,982,000	228,018,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084.9938A	84A	101동 1,5호, 103동 1,2호, 104동 1호, 107동 1,5호, 108동 1,5호	1층	3	373,023,000	277,977,000	–	651,000,000	10,000,000	22,55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227,850,000
			2층	7	378,180,000	281,820,000	–	660,000,000	10,000,000	23,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231,000,000
			3층	7	382,764,000	285,236,000	–	668,000,000	10,000,000	23,4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33,800,000
			4층	7	387,921,000	289,079,000	–	677,000,000	10,000,000	23,85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36,950,000
			5층	7	391,932,000	292,068,000	–	684,000,000	10,000,000	24,2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39,400,000
			6~9층	28	396,516,000	295,484,000	–	692,000,000	10,000,000	24,6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242,200,000
			10~19층	69	400,527,000	298,473,000	–	699,000,000	10,000,000	24,95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44,650,000
			20층 이상	54	405,111,000	301,889,000	–	707,000,000	10,000,000	25,35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47,450,000
		102동 3호, 103동 4호, 104동 3호, 105동 4,5호, 106동 4,5호	1층	6	373,023,000	277,977,000	–	651,000,000	10,000,000	22,55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227,850,000
			2층	7	378,180,000	281,820,000	–	660,000,000	10,000,000	23,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231,000,000
			3층	7	382,764,000	285,236,000	–	668,000,000	10,000,000	23,4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33,800,000
			4층	7	387,921,000	289,079,000	–	677,000,000	10,000,000	23,85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36,950,000
			5층	7	391,932,000	292,068,000	–	684,000,000	10,000,000	24,2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39,400,000
			6~9층	28	403,965,000	301,035,000	–	705,000,000	10,000,000	25,25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246,750,000
			10~19층	66	407,403,000	303,597,000	–	711,000,000	10,000,000	25,55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248,850,000
			20층 이상	18	412,560,000	307,440,000	–	720,000,000	10,000,000	26,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52,000,000